□ **일본 관세율**

<2013년 일본 바지락 관세율>

HS 코드	품목명	관세구분	관세율(%)
030771320	바지락(신선) (Manila clam)	아세안	0.061
		멕시코	Free
		필리핀	0.012
		베트남	0.023
		페루	Free
030779131	바지락(기타) (Manila clam)	아세안	0.061
		멕시코	Free
		태국	0.018
		필리핀	0.026
		베트남	0.023
		페루	0.047

출처: 세계 HS 정보 시스템 (2014. 1. 9)

□ **일본 통관 및 수입검사**

○ 식품위생법관계

-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 담당에게「식품 등 수입신고서(食品等輸入届出書)」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 바지락에 대해서도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검역소에서 심사, 패독 등의 검사 후, 동법 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완료(届出済)」가 날인되어 반환된다.

○ 수입통관

「수입(납세)신고서」에 상기에서 취득한 「신고확인완료 식품 등 수입신고서」및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보험명세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또한, 수출국에 따라 특혜관세, EPA의 적용이 있다. 특혜관세, EPA관세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심사・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된다.

○ 기타 국내 관련법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 동 법에 근거,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생식품에는 원산지(국가)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 부당경품 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관계

- 과대한 경품제공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어 있음